

선 람	기 관 의 장

제996호 2017. 12. 1.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훈 령

○ 삼척시 훈령 제276호 삼척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폐지규정 -- 2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4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3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91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6
- 삼척시 공고 제92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9
- 삼척시 공고 제933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0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11월 30일

삼척시장 김 양 호

삼척시 훈령 제276호

삼척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폐지규정

삼척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17 - 14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01.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85 외3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12. 0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산 72-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85	20171201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 기존 도로명활용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18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03	20171201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활용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0-38, 20-4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길 236-11	20171201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 산43, 산152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황조길 255-38	20171201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5		이	하	여	백		
6							
7							
8							
9							
10							
11							
12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도로명주소 4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팔천리 산 72-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85	20171201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 도로명 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188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 103	20171201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옥원,이천)복합 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0-38, 20-4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길 236-11	20171201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 산 43, 산152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황조길 255-38	20171201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삼척시 공고 제 2017 - 91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삼척시장

1. 사업주체 상호 및 소재지

- 상호 : 주식회사 세영개발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89, 세영빌딩 402호

2. 사업개요

- 대지위치 : 강원도 삼척시 마달동 산34-4번지 외 18필지
- 대지면적 : 17,390㎡
- 건축면적 : 2,584.6591㎡
- 연 면 적 : 59,940.6758㎡
- 총세대수 : 418세대
- 사업규모 : 아파트 5동(지하3층/지상28층) 및 부대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벽식구조)
- 사업비 : 68,958백만원

3. 사업시행기간 : 2014. 07. 01 ~ 2017. 12. 27

4. 변경사항

- 사업기간 : '14.07.01~'17.11.30 ⇒ '14.07.01~'17.12.27
- 교목수량 : 1,002주 ⇒ 1,121주(증 119주) ⇒ 및 시설물 보강(파고라,등의자,평의자)
- 상가1층 내부칸막이 삭제(1실)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 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제 협의조서

■ 도시계획시설(소로2-13호선)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삼척시 마달동 10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3호선) 사업
 - 나. 명 칭 : 소로 2-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최근)
	등급	류별	번호								
결정	소로	2	13	8~17	국지 도로	1,187	중로1-9 마달동 산36-2	대로1-3 마달동 10-2도	일반 도로	마달동 연결 도로	강원도고시 제1989-10호 (1989.2.4.) 삼척시고시 제2014-126호 (2014.9.22.)
금회 시공	소로	2	13	8~17	국지 도로	144	마달동 107-11도	마달동 산34-6입	일반 도로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식회사 세영개발 대표이사 정민호
 - 나.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89, 402(옥동, 세영빌딩)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일 : 2017. 5. 19.
 - 나. 준공예정일 : 당초 2017. 11. 30. → 변경 2017.12.2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 가.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관 계	
계		12필지			624		-	-	
1	삼척시 마달동	산34-6	임	16	16	(주)세영개발			
2	"	산35-1	임	53	53	삼척시			
3	"	산35-2	임	11	11	(주)세영개발			
4	"	105-1	대	35	35	(주)세영개발			
5	"	106-1	대	118	118	삼척시			
6	"	106-4	도	35	35	삼척시			
7	"	107-7	전	113	113	(주)세영개발			
8	"	107-9	도	102	102	삼척시			
9	"	107-10	도	17	17	삼척시			
10	"	107-11	도	1	1	삼척시			
11	"	108-2	도	66	66	삼척시			
12	"	178	도	57	57	국(건설부)			

- 나. 지장물건조서 : 해당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가. 무상 귀속할 공공시설 : 도로 1개 노선
 - 나. 도로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소로	2	13	8~17	국지도로	144m	마달동 107-11도	마달동 산34-6입	일반도로	-	

삼척시 공고 제2017-92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였으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계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계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17.11.30. ~ 2017.12.14 .(15일간)
- 3. 말소일자 : 2017.11.30.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이송○
	주 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470-2	
	목조 (1층:27.43㎡ 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30.

삼 척 시 장

삼척시 공고 제2017-933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였으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계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계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17.11.30. ~ 2017.12.14 .(15일간)
- 3. 말소일자 : 2017.11.30.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청○
	주 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6-19	
	목조 (1층:38.18㎡ 단독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30.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